

제2849호
2021. 7.19.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전화: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조 례]

제1565호 :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1566호 : 서울특별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외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4
제1567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리에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6
제156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8
제156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제1570호 :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157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16
제1572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려치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1573호 : 서울특별시 중구 거가정지위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제157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안주 저장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2
제1575호 :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 관리 조례	24
제157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기보 조례	27
제157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제157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제157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1580호 : 서울특별시 중구 코모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47
제1581호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유산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51
제158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53
제158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규 칙]

제740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59
제74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61

◎ 공 고

제2021-556호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68
--	----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 (02)3396-4951 / FAX. (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서울특별시중구

자 치 법 규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65호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를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66호

서울특별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가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서울특별시 중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서울특별시 중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구의 여론수렴 사업
2.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서울특별시 중구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 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행정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67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합창단, 실버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실버악단, 청소년교향악단, 민속예술단 등의 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제2조에 따른 각 예술단체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출연자를 비전속단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각 예술단체 정원은 비전속단원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한다.

제4조(기능)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의 확산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공연을 통한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욕구 충족
3.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참가 및 공연을 통한 주민 화합에 기여

제5조(운영) ① 예술단체는 구청장이 운영하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실적 및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3년을 단위로 위

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위촉) ①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구 문화예술 소관업무 국장을 임명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예술감독, 지도단원 등은 공개전형 또는 단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의무) ① 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단원을 통솔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품위유지, 기량향상, 단원 간의 화합에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대회·공연, 구 주관·주최 행사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유 없이 공연 참가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연습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단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경비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반주자, 예술감독, 단원 등에게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예술단체의 구 행사 참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68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제4조(지원의 범위)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5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법률지원 소송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비밀준수)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9조(정보안내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의 부모 사망 신고 시 해당 가정에 이 조례에 따른 상속채무 법률 지원 정보를 리플릿 등을 통해 제공 및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속채무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연락처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연락처	
	주 소					
	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속채무 방지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제출서류: 1.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2.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끝.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상속채무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				
연	번		신청일	
지 원 대 상 자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신 청 인	(관계)			
신 청 내 역				
지 원 내 역 (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진 행 사 항 및 결 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69호

서울특별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제4조(의사상자 예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2.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
3. 구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70호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상응하는”을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가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에 한정한다)의 유가족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유가족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5세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한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우선순위는 법 제13조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9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 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제4조제2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유가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유족”을 “유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년이내”를 “1년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망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제6조제1호 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0,000원씩”을 “50,000원씩”으로 한다.

제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71호

서울특별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불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72호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어르신 영양·건강사업”이란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어르신 영양·건강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식사지원, 영양 관리 예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만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 ③ 어르신 영양·건강 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자체계획을 수립하

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어르신 영양건강관리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73호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1. 센터장
2. 센터 이용자 대표
3.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센터 직원의 대표
5. 건강가정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당연직)
6. 후원자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운영 지침」을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74호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악취 원인조사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지도의 작성)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구청장은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75호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보칙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별표3과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76호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대학 또는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친목도모,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쉼터, 상호교류, 사회참여 등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가 조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이와 유사한 사업이나 정책의 기본 계획이 있는 경우 기본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수준 향상

마.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

바.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네트워크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호선된 위촉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1. 기획·경제·주택·복지·문화·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2명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4.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청년위원은 2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단, 이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해당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의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정책

발굴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청년네트워크와 협력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과정 참여 지원
2.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제안 지원
3. 청년정책 우수제안 선정 및 포상 지원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년을 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중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한 청년(재학·휴학·졸업생 모두 포함)
3. 중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④ 제1항에 따른 청년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과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주거안정)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생활안정)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창의적인 청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공간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공간을 위해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④ 청년공간의 입주 자격 및 그 대상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표창)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 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청년 또는 단체, 개인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표창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77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제3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구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구청장 또는 가맹점(이하 “지역화폐 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제9조의2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6. “가맹점”이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지역화폐의 발행 및 판매)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시스템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또는 모바일형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역화폐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화폐의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유통범위”를 “유통”으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유통)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중구 관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의 제1항 번호를 삭제하고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지역화폐 사용대상) 지역화폐는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중구청(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중구청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제7조의 제목 “가맹점 지정 및 취소”를 “가맹점의 등록”으로 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 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보관·판매·충전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화폐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지역화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보관·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법 제10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자식 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판매대행점은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지역화폐의 판매·보관·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운영대행사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발행, 결제, 환불 등의 자료의 수집, 분석 등을 통한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된 제반 자료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②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협약서,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
- ④ 운영대행사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일정한 주기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⑥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⑦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 2. 통계작성 및 판매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운영대행사 선정 및 협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행 및 위탁할 수 있다.

- 1.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업무
- 2. 지역화폐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
- 3. 가맹점의 관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지역화폐 인식개선과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지역화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위탁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위·감독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운영대행사 선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제10조의2에 따라 대행한 업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될 때에는 운영대행사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써 운영대행사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에는 해당 운영대행사는 구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된 제반의 자료를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지류형 지역화폐”를 “지역화폐”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구청장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환전청구 및 환전) 모바일 지역화폐의 경우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5천만원으로 한다. 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역화폐 정산한도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지역화폐 구입 및 할인·수수료·인센티브 제공 방법) ① 지역화폐는 현금 또는 체크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의 발행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역화폐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③ 인센티브는 판매대행점에서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제2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카드판매 수수료는 구청에서 보전하며,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와 협의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② 구청장은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점수, 인센티브(추가충전, 캐시백 등을 포함한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역화폐 사용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의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2. 국가시책 반영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제3호부터 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중구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설치)

3. 운영대행사 선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역화폐 가맹점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중구의회 의원
 2. 지역화폐 업무 담당 실·국장
 3. 소상공인 지원 관련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학회,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복지분야 전문가 및 유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①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 ③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사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3(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4(위원회 통합 운영)** 제16조 각 호의 심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더하여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사항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9조(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20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화폐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제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상법」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 규정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한 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업 종 및 취 급 품 목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폰 :)	
	사 업 장 소 재 지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78호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중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에 따른 지원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79호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에 대한 이차지원
2.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제6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② 기금운용관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80호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면적 2천제곱미터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
2.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취소 근거 및 사유

제7조(사업비 지원)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결정 및 그 취소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발전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업무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가.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 나. 소비자단체 또는 경제 관련 시민단체·사회단체의 대표
 - 다. 유통산업, 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심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

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화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81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였거나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관리 의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
 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 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훼손 관련 사건·사고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고장·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훼손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6조(지급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원상회복 비용이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 : 1만원
 2. 원상회복 비용이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 3만원
 3.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5만원
- 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처리 및 포상지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은 고장·파손 사실 및 공공시설물 훼손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대장에 지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동일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82호

서울특별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 마.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있는 학교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교통안전시설”이란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된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통학로를 표시한 어린이 통학 안전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관리

제8조(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0조(등·하교 교통안전지도)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지킴이 등을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

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규정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83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 중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야간에”를 “건축물부설주차장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청장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제2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24조제4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제25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옥외보안등, CCTV 등 안전에 필요한 시설 설치
2. 부설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시설 보수 등

③ 주차장 운영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운영 수익의 보전비용(인근 노외 공영주차장 1면 당 거주민 주차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④ 개방 부설주차장 이용·관리 등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개방 부설주차장 소유자와 중구청 간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 ⑤ 제24조제5호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하였을 때
3. 개방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때
4.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또는 관련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별표 1의 비고 제8호의2 “(단 1급지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은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40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실적가산점) ① 구청장은 직무수행 중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점수(이하 “실적가점”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실적가점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 ② 실적가점 부여 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 신 설 >	제36조(실적가산점) ① 구청장은 직무수행 중 탁월한 업무성적을 거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그 성과에 따라 점수(이하 “실적가점”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실적가점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실적가점 부여 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41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1,250	812	25	116	297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42	808	21	116	297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9	30	1	13	15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보건·간호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8			8	
6급 소계		243	165	3	24	51
행정		153	97	3	9	44
세무		15	15			
사회복지		9	5			4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전기2,화공1)		5	5			
보건		1			1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6			6	
환경		1	1			
시설(토목8,건축6,지적3,디자인1,도시계획2)		20	20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3	1		2	
행정·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2			2	
운전		5	5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계	378	262	9	37	70
행정	218	142	6	9	61
세무	21	21			
사회복지	19	9		1	9
전산	3	3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전기6,화공3)	14	14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8	3		5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14			14	
시설(토목15,건축12,자적6, 디자인1, 도시계획2, 교통시설2)	38	38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시설관리	4	4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1	1			
8급 소계	358	246	2	29	81
행정	191	120	2	6	63
세무	32	32			
사회복지	29	11			18
전산	6	6			
방호	2	2			
공업(기계4,전기5,화공1)	10	10			
녹지	6	6			
보건	4			4	
의료기술	5			5	
간호	14			14	
환경	2	2			
시설(토목18,건축10,자적7,교통시설2)	37	37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1	1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1)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9급 소계	195	97	6	12	80
행정	54	22	2	2	28
세무	14	14			
사회복지	34	6			28
전산	1			1	
방호	6	5	1		
공업(기계5,전기9)	14	13	1		
녹지	3	3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6,건축3,지적4)	13	13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1	1			
위생	4	4			
운전	30	10	2	3	15
전기운영(전기)	2	2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9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다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작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등	작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등	작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등
총 계		1,250	812	25	116	297	총 계		1,250	812	25	116	297	총 계		1,250	812	25	116	297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구 청 장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42	808	21	116	297	일반직 계		1,242	808	21	116	297	일반직 계		1,242	808	21	116	297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정		1	1				행정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4급 소계		6	5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3	3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9	30	1	13	15	5급 소계		59	30	1	13	15	5급 소계		59	30	1	13	15
행정		36	21	1		14	행정		36	21	1		14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복지		1	1				행정·복지		1	1				행정·복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보건		2			2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시설		4	4				행정·시설		4	4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의무·약무		1			1		의무·약무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8			8		의무		8			8		의무		8			8	
6급 소계		241	163	3	24	51	6급 소계		243	165	3	24	51	6급 소계		243	165	3	24	51
행정		153	97	3	9	44	행정		153	97	3	9	44	행정		153	97	3	9	44
세무		15	15				세무		15	15				세무		15	15			
사회복지		9	5			4	사회복지		9	5			4	사회복지		9	5			4
전산		1	1				전산		1	1				전산		1	1			
방호		1	1				방호		1	1				방호		1	1			
공업(기계2,전기2,화공1)		5	5				공업(기계2,전기2,화공1)		5	5				공업(기계2,전기2,화공1)		5	5			
보건		1			1		보건		1			1		보건		1			1	
복지		3	3				복지		3	3				복지		3	3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약무		2			2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6			6		간호		6			6		간호		6			6	
환경		1	1				환경		1	1				환경		1	1			
시설(토목8,건축6,지적3,다목적1,도시계획2)		20	20				시설(토목8,건축6,지적3,다목적1,도시계획2)		20	20				시설(토목8,건축6,지적3,다목적1,도시계획2)		20	20			
시설(토목·건축)		1	1				시설(토목·건축)		1	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3	1		2		행정·보건		3	1		2		행정·보건		3	1		2	
행정·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행정·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행정·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2			2		보건진료		2			2		보건진료		2			2	
운전		3	3				운전		5	5				운전		5	5			

현						개							
행						정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등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등
7급 소계		379	263	9	37	70	7급 소계		378	262	9	37	70
행정		218	142	6	9	61	행정		218	142	6	9	61
세무		21	21				세무		21	21			
사회복지		19	9		1	9	사회복지		19	9		1	9
전산		3	3				전산		3	3			
속기		3		3			속기		3		3		
방호		6	6				방호		6	6			
공업(기계5,전기6,화공3)		14	14				공업(기계5,전기6,화공3)		14	14			
녹지		3	3				녹지		3	3			
수의		1	1				수의		1	1			
보건		8	3		5		보건		8	3		5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환경		1	1				환경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14			14		간호		14			14	
시설(토목15,건축12,자적6, 디자인 1, 도시계획2, 교통시설2)		38	38				시설(토목15,건축12,자적6, 디자인 1, 도시계획2, 교통시설2)		38	38			
방재안전		1	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위생		3	3			
시설관리		5	5				시설관리		4	4			
운전		10	10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1	1				전기운영(전기)		1	1			
8급 소계		354	242	2	29	81	8급 소계		358	246	2	29	81
행정		191	120	2	6	63	행정		191	120	2	6	63
세무		32	32				세무		32	32			
사회복지		29	11			18	사회복지		29	11			18
전산		6	6				전산		6	6			
방호		2	2				방호		2	2			
공업(기계4,전기5,화공1)		10	10				공업(기계4,전기5,화공1)		10	10			
녹지		6	6				녹지		6	6			
보건		4			4		보건		4			4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4			14		간호		14			14	
환경		2	2				환경		2	2			
시설(토목18,건축10,자적7,교통시설 2)		37	37				시설(토목18,건축10,자적7,교통시설 2)		37	37			
방재안전		1	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1	1				시설관리		1	1			
운전		6	6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3	3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1)		1	1				사무운영(워드1)		1	1			

현		행					개		정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등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등
9급 소계		200	102	6	12	80	9급 소계		195	97	6	12	80
행정		52	20	2	2	28	행정		54	22	2	2	28
세무		14	14				세무		14	14			
사회복지		34	6			28	사회복지		34	6			28
전산		1			1		전산		1			1	
방호		6	5	1			방호		6	5	1		
공업(기계5,전기9)		14	13	1			공업(기계5,전기9)		14	13	1		
녹지		3	3				녹지		3	3			
보건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6,건축3,지적4)		13	13				시설(토목6,건축3,지적4)		13	13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1	1				시설관리		1	1			
위생		4	4				위생		4	4			
운전		36	16	2	3	15	운전		30	10	2	3	15
전기운영(전기)		2	2				전기운영(전기)		2	2			
기계운영(기계)		3	2			1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10	1		1	8	사무운영(워드)		9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나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다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다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별정직 계		7	3	4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비서		1	1			
전문위원		2		2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비서		3	1	2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556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의 기준 등) 및 같은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나. 처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다. 처분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기간 : 2021. 7. 19.(월) ~ 2021. 8. 6.(금)

마.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바. 공고대상자 및 내역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 원상복구 명령						
당 사 자	성명(명칭)	김*태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왕십리로39길 30, 1*2동 3*3호(신당동, 한***로)					
처분의원인이 되는 사실	세대 앞 복도(공용부분) 천장에 블라인드, 복도바닥에 마루 설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원상복구 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행위허가의 기준 등), 같은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같은법 제99조(벌칙)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중구청	부서명	주택과	담당자	김원덕
		주 소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본관 6층			전화번호	02-3396-5715
		전자우편	2012112073 @junggu.seoul.kr			팩스번호	02-3396-9087
	제출기한		2021년 8월 6일까지				

2021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